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상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

임.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비상용 발전설비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8조의3(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u> 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 및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문자 등 예·경보 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입력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면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등 송출기관이 이를 발송하고 국민이 휴대폰, TV, DMB 및 지방자치단체 예·경보 단말 등을 통해 이를 수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태풍, 전기차 화재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발생 시 대규모 정전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 예·경보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재난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관한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경보 송출 시스템은 이중 전원 및 비상전원 등이 구비된 정부 데이터 센터 또는 각 기관 내부 전산실에 설치·운영 중이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²⁾에 따라 전력공급장치를 분산 및 다중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전이 발생하여도 예·경보가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있다는 이유로 입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용 설비, 피난용 승강기
등의 가동을 위한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난 예·경보 수신에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이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춰야 할 시설
의 종류를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어 시설물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도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